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운영지침

[시행 2022. 6. 27.]

한국사회복지협의회(사회공헌센터), 02-2077-395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의 인정절차 및 방법 등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사회공헌 인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공헌 활동”이라 함은 기업 또는 공공기관 등(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이 지역사회 내 비영리단체와의 교류협력을 통해 기업등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 등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에 공헌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지역사회공헌 인정(이하 “인정” 또는 “인정제”라고 한다)”이라 함은 지역사회공헌 인정을 신청하는 기업등의 지역사회공헌 활동 실적과 성과를 종합평가하여 인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인정기관(이하 “인정기업등”이라 한다)”이라 함은 지역사회공헌 인정심사를 통해 인정받은 기업등을 말한다.

제2장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도

제3조(인정심사 신청) ① 지역사회 내 비영리단체와 교류협력을 통해 지역사회공헌 활동을 수행한 실적과 성과가 있는 기업등은 인정심사를 신청할 수 있고, 이때 심사범위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인정심사 시행공고 직전 일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② 지역사회공헌 인정을 받고자 하는 기업등은 별표 2에 따라 지역사회공헌 인정심사 비용을 부담한다.

제4조(인정심사 제출서류) 인정을 받으려는 기업등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의 취소 확인 및 동의서, 별지 제2호서식의 비영리단체 추천서 및 다음 각호의 구비서류를 지역사회공헌 인정심사 계획 공고에서 정하는 기일까지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사무국에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사업자단위 과세의 경우 종된 사업장 명세 포함)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2. 인정심사 지표별 증빙자료

제5조(인정대상) ① 지역사회공헌 인정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간기업 : 대기업(사업장, 지점, 지소 등),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2. 공공기관 : 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공기관(공기업, 출자기관, 출연기관)

3. 사회적경제기업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4. 기타기관 : 교육기관, 의료기관, 기타단체 등

② 인정대상의 단위는 사업자등록증(단위 사업장) 및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소재지를 기준으로 주된 사업장과 종된 사업장이 별개의 인정대상에 해당한다.

제6조(인정심사 기준) 지역사회공헌 인정심사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인정의 유효기간 및 효력) ① 지역사회공헌 인정의 유효기간은 인정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인정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인정기업등은 매년 인정심사에 참여하여 재인정을 받아야 한다.

③ 인정기업등은 제7조제1항의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홍보를 위한 인쇄물 등에 별표 3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지역사회공헌 인정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④ 인정을 받지 않은 기업등은 지역사회공헌 인정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인정의 취소) ①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은 인정기업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

2. 폐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사회적 논란 또는 물의를 일으켜 법적 판결을 받아 지역사회공헌이라는 목적 달성과 현저하게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리고 이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별지 제1-2호 서식의 확인 및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인정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인정심사위원회 위원 중에서 15명 이내의 위원이 참여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인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 및 중앙행정기관, 지방행정기관, 유관기관과 단체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1호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기업등에 대하여는 그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사무국의 운영 등) ①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8호에 따라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②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인정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역사회공헌 인정의 심사·교육·컨설팅·연구·행사·취소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라 사회복지협의회(중앙·시도·시군구 협의회)에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이때, 중앙협의회는 사무국을 ‘중앙사무국’, 시·도 협의회는 사무국을 ‘지역사무국’, 시·군·구 단위의 시·군·구 협의회는 ‘기초사무국’이라 한다.

④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와 관련하여 제3항의 각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해당하는 사업은 중앙사무국이 수행하고,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해당하는 사업은 지역사무국이 수행하며, 제10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기초사무국이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사업계획 수립
2.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심사계획 수립, 심사지표 개발 및 연구
3.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인정 증명서 및 인정패 발급
4.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관련 전문 인력 양성
5.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우대혜택 후원기관 발굴 협약
6.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7.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8.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관련 프로그램(교육, 포럼, 컨설팅 등) 개발 및 운영
9.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활성화를 위한 행사 및 홍보
10. 그 밖에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의 운영·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⑤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3항의 인정제 사무국 및 제4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예산을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인정의 날) ①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은 인정제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기업등의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에 공헌하는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12월 1일을 지역사회공헌 인정의 날(이하 “인정의 날”이라고 한다)로 정하고, 인정의 날부터 1주간을 인정주간으로 한다.

②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은 인정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기업등의 지역사회공헌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시책의 발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지역사회공헌 인정심사위원회

제11조(인정심사위원회 기능 및 운영) 제9조제3항의 중앙 및 지역사무국은 지역사회공헌 인정 기업등의 선정을 위하여 지역사회공헌 인정심사위원회(이하 “인정심사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제12조(인정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인정심사위원회는 중앙협의회가 운영하는 전국단위의 최종인정심사위원회와 시·도 협의회가 운영하는 지역단위의 지역인정심사위원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인정심사위원은 사회공헌에 관하여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들로서,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자로 구성한다.

1.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2. 대학(원) 소속 교수
3. 비영리단체 소속 재직자
4. 현장 전문가
5. 사회복지협의회 소속 관계자

③ 인정심사위원회는 최소 5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 중 외부 인원을 과반수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④ 인정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전문성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평가할 것
2. 평가와 관련하여 비밀을 준수할 것
3.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평가에 참여하지 않을 것

⑤ 인정심사위원은 자격을 이용하여 기업등 금품을 요구할 수 없으며, 제4항에 위반하거나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훼손한 사실이 확인되는 즉시 인정심사위원 자격이 박탈되며 위원 활동을 할 수 없다.

제13조(인정심사위원회의 개최) ① 지역인정심사위원회는 지역사무국이 주관하고, 최종인정심사위원회는 중앙사무국이 주관한다.

② 인정심사위원회는 각 심사 단계별로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제14조(인정심사위원회의 심의 및 결과 안내) ① 중앙사무국과 지역사무국은 심사 및 인정심사위원회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협업하여야 한다.

② 중앙사무국과 지역사무국은 각 주관하는 심사(지역심사, 중앙심사)의 결과 및 자료를 다음 단계의 주관 사무국에 전달하여야 한다.

③ 중앙사무국은 단계별 심사 결과를 인정심사 참여 기업등에 알리고, 최종 심사 결과를 보건복지부 및 중앙행정기관, 지방행정기관, 유관기관과 단체 등에 알려야 한다.

제15조(인정 증명서 등의 발급) 중앙사무국은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등으로 선정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인정 증명서와 별표 3에 따라 인정패를 발급하여야 한다.

별표 / 서식

[별표 1]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심사기준(제6조 관련)

[별표 2] 지역사회공헌 인정심사 비용 등 기준(제3조제2항 관련)

[별표 3] 지역사회공헌 인정 표시(제7조제3항 및 제15조 관련)

[별지 제1-1호서식]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신청서(제4조)

[별지 제1-2호서식]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취소 확인 및 동의서(제4조 및 제8조제2항)

[별지 제2호서식]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비영리단체 추천서(제4조)

[별지 제3호서식]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심사 증빙자료 작성양식(제4조)

[별지 제4호서식] 지역사회공헌 인정 증명서(제15조)

[별표 1]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심사기준(제6조 관련)

1. 심사유형 및 점수

유형구분	유형 I	유형 II	유형 III	유형 IV	유형 V
대상	중앙공공기관, 대기업	지방공공기관, 중견기업	중소기업	사회적경제기업, 교육기관, 의료기관, 기타단체 등	소기업·소상공인
지표수	25	20	15	10	7
점수	120/200	120/200	100/200	100/200	100/200

※ 민간기업 유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중소기업기본법」,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①대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정 및 통지 공문, ②중견기업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중견기업확인서, ③중소기업(소상공인)은 중소기업벤처부의 중소기업확인서로 구분한다.

2. 심사항목 및 배점

심사 영역	심사 분야	지표 번호	심사항목(지표명)												
			유형 I	배점	유형 II	배점	유형 III	배점	유형 IV	배점	유형 V	배점			
환경	환경경영 [1-2]	1	추진체계	5	추진체계	5	추진체계	5							
		2	친환경사업	5	친환경사업	5	친환경사업	5	친환경사업	5	친환경사업	5			
사회	추진 체계 [1-1-4]	1	추진전략	5											
		2	추진조직	5											
		3	직원교육	10	직원교육	15	직원교육	20	직원교육	30	직원교육	10			
		4	의사결정	10	의사결정	10	의사결정	15	의사결정	20					
	문제 인식 [2-1-3]	1	문제확인	10	문제확인	15	문제확인	15							
		2	문제공유	10	문제공유	15	문제공유	15	문제공유	35	문제공유	30			
	프로 그램 [3-1-5]	3	프로그램 기획	10	프로그램 기획	10									
		1	자원투입	10	자원투입	10	자원투입	20	자원투입	25					
		2	자원봉사	10	자원봉사	15	자원봉사	20	자원봉사	25	자원봉사	50			
		3	프로그램운영	10	프로그램운영	10	프로그램운영	20							
		4	프로그램점검	10											
	네트 워크 [4-1-5]	5	프로그램평가	10	프로그램평가	10									
		1	지역주민	10	지역주민	15									
		2	비영리단체	10	비영리단체	15	비영리단체	20	비영리단체	30	비영리단체	50			
		3	사회적경제기업	10											
		4	중소기업	10	중소기업	10									
	성과 영향 [5-1-3]	5	지방정부	10	지방정부	10									
		1	성과측정	5											
		2	영향평가	5	영향평가	10	영향평가	15	영향평가	10					
	지배 구조	윤리경영 [1-3]	3	성과확산	5	성과확산	10	성과확산	15	성과확산	15	성과확산	50		
1			이해관계자	5	이해관계자	5	이해관계자	5	이해관계자	5	이해관계자	5			
2			리스크관리	5	리스크관리	5	리스크관리	5							
합계			25	200	20	200	15	200	10	200	7	200			

※ 지역사회공헌 인정심사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제16조에 따라 별도의 지침, 기준 등에 규정한다.

3. 가산점(10점)

구분	적용기준				
	배점	혁신성	전문성	확산성	협력도
사회공헌 대표 프로그램 (100점 환산)	매우우수	30	30	20	20
	우수	24	24	16	16
	보통	18	18	12	12
	부족	12	12	8	8
	매우부족	6	6	4	4

※ 가산점 지표정의는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현안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4. 인정기준

구분	점수	적용기준
중앙공공기관·대기업	120점	가산점을 포함하여 210점 중 120점 이상 획득
지방공공기관·중견기업	120점	가산점을 포함하여 210점 중 120점 이상 획득
중소기업	100점	가산점을 포함하여 210점 중 100점 이상 획득
사회적경제기업, 교육기관, 의료기관, 기타단체	100점	가산점을 포함하여 210점 중 100점 이상 획득
소상공인	100점	가산점을 포함하여 210점 중 100점 이상 획득

5. 포상심사

- 추천대상 : 지역인정심사위원회 심사결과 고득점을 획득하고 심사단의 추천을 받은 기업등
- 준용근거 : 「정부포상업무지침」, 「보건복지부장관표창 운영지침」, 「보건복지부장관 우등상 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 등 절차 준용

구분	적용기준																													
[보건복지부장관 상] 사회공헌 대표 프로그램 (100점 환산)	기업과 지역, NGO 등 교류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회공헌 프로그램 평가																													
	<table border="1"> <thead> <tr> <th>배점</th> <th>혁신성</th> <th>전문성</th> <th>확산성</th> <th>협력도</th> </tr> </thead> <tbody> <tr> <td>매우우수</td> <td>30</td> <td>30</td> <td>20</td> <td>20</td> </tr> <tr> <td>우수</td> <td>24</td> <td>24</td> <td>16</td> <td>16</td> </tr> <tr> <td>보통</td> <td>18</td> <td>18</td> <td>12</td> <td>12</td> </tr> <tr> <td>부족</td> <td>12</td> <td>12</td> <td>8</td> <td>8</td> </tr> <tr> <td>매우부족</td> <td>6</td> <td>6</td> <td>4</td> <td>4</td> </tr> </tbody> </table>	배점	혁신성	전문성	확산성	협력도	매우우수	30	30	20	20	우수	24	24	16	16	보통	18	18	12	12	부족	12	12	8	8	매우부족	6	6	4
배점	혁신성	전문성	확산성	협력도																										
매우우수	30	30	20	20																										
우수	24	24	16	16																										
보통	18	18	12	12																										
부족	12	12	8	8																										
매우부족	6	6	4	4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사회공헌 프로그램 수행 이력 (100점 환산)	사회적 책임 준수 및 지속적인(3년 이상)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한 기업등 평가																													
	<table border="1"> <thead> <tr> <th>심사항목</th> <th>심사내용</th> <th>배점</th> </tr> </thead> <tbody> <tr> <td>수공기간</td> <td>사회공헌활동 활성화 수공기간</td> <td>20</td> </tr> <tr> <td>환경개선노력</td> <td>사회공헌활동 수행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td> <td>30</td> </tr> <tr> <td>업무파급효과</td> <td>사회공헌 활동의 파급력</td> <td>30</td> </tr> <tr> <td>현신성</td> <td>사회공헌활동 활성화 업무에 대한 현신성</td> <td>20</td> </tr> <tr> <td colspan="2">합계</td> <td>100점</td> </tr> </tbody> </table>	심사항목	심사내용	배점	수공기간	사회공헌활동 활성화 수공기간	20	환경개선노력	사회공헌활동 수행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	30	업무파급효과	사회공헌 활동의 파급력	30	현신성	사회공헌활동 활성화 업무에 대한 현신성	20	합계		100점											
심사항목	심사내용	배점																												
수공기간	사회공헌활동 활성화 수공기간	20																												
환경개선노력	사회공헌활동 수행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	30																												
업무파급효과	사회공헌 활동의 파급력	30																												
현신성	사회공헌활동 활성화 업무에 대한 현신성	20																												
합계		100점																												

[별표 2]

지역사회공헌 인정심사 비용 등 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지역사회공헌 인정심사 비용(부가세 포함)

유형구분	유형 I	유형 II	유형 III	유형 IV	유형 V
대상	중앙공공기관, 대기업	지방공공기관, 중견기업	중소기업	사회적경제기업, 교육기관, 의료기관, 기타단체 등	소기업·소상공인
신규심사	550,000원	550,000원	440,000원	440,000원	440,000원
재심사 (유효기간 연장)	440,000원	440,000원	330,000원	330,000원	330,000원

2. 심사일수

서류심사	지역심사	중앙심사	포상심사	총 소요일수
30일	14일	14일	14일	72일

3. 인정심사위원회 심사위원 수당

- 가. 기본수당 : 1인 25개소 이하 250,000원
- 나. 초과수당 : 1인 25개소 초과 시 기본수당에 1개소별 10,000원 추가 수당 지급
- 다. 지급한도 : 1인 100개소 초과 시 1,000,000원 한도로 지급액 제한
- 라. 지급제외 : 보건복지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사회복지협의회 소속 관계자는 심사위원 수당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 마. 예외규정 : 최종인정심사위원회 심사위원 수당은 기본수당 및 초과수당의 1/2 지급하고, 지급한도는 1인 200개소 초과 시 1,000,000원 한도로 지급액을 제한한다.

4. 비용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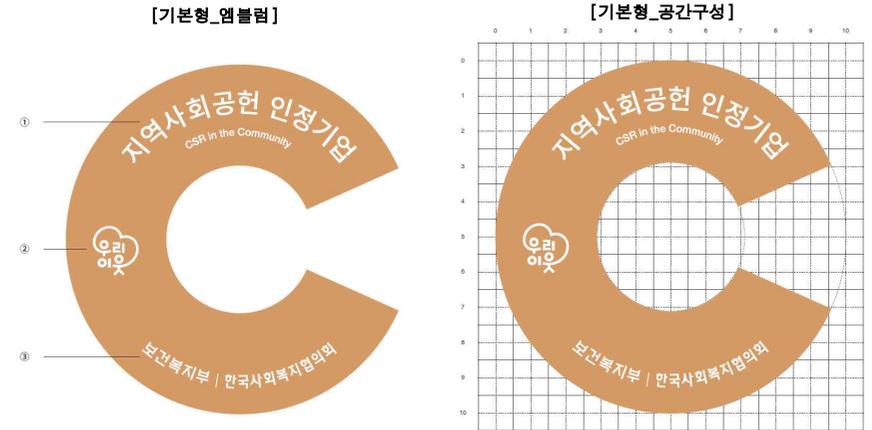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소기업 이하 확인서 제출 시 인정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정심사 비용 일부를 후원기관 지정후원금을 활용하여 감면할 수 있다.

[별표 3]

지역사회공헌 인정 표시(제7조제3항 및 제15조 관련)

- 엠블럼 : 지역사회(Community), 변화(Change), 협력(Collective Impact), 인정(Certification) 상징
- 인정패 및 인정라벨 :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사회공헌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 표징
- 사용기간 : 인정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 연도 12월 31일까지(회계연도 기준 12월 31일)

1. 도안모형



- ①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또는 인정기관) 및 승인받은 연도를 표시한다.
(단, 연속으로 인정받은 기업등은 최초 인정 연도를 기준으로 승인받은 연도 표시)
- ②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또는 인정기관)이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상징한다.
- ③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도 시행 기관(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을 지칭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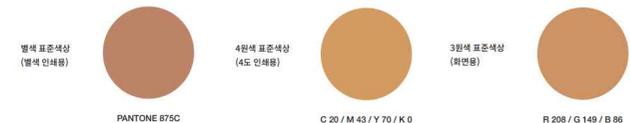
가. 공간구성

인정 표시는 이미지 변질이나 왜곡이 없도록 시각상징사용지침서(이하 “지침서”라 한다.)에 따라 비례 규정을 반드시 준수한다.(지침서(PDF)는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홈페이지(<https://crkorea.kr/csrcommunity/>)에서 인정기업등에 제공)

나. 상징색

인정 표시의 상징색은 엠블럼 및 기타 매체에 적용하여 고유한 색상 이미지를 전달해야 한다. 상징색은 지침서에 정한 표준 색상을 반드시 준수한다.

- 기본형 : 갈색(Brown)과 금색(Gold)을 띄는 금빛갈색(Brown Gold)



다. 지정서체

인정 표시의 지정서체는 굵기·비례·자간 등을 임의로 변형해서는 안 된다. 임의 변형 사용은 이미지를 왜곡시키거나 정보전달 효과를 약화시킴으로 지정서체를 사용할 때에는 항상 서체 저작권에 주의하여 사용해야한다.

- 국문 중간 서체 : Noto Sans CJK KR Medium
- 국문 굵은 서체 : Noto Sans CJK KR Bold
- 영문 기본 서체 : Helvetica Neue LT Std 55 Roman
- 영문 중간 서체 : Helvetica Neue LT Std 65 Medium
- 영문 굵은 서체 : Helvetica Neue LT Std 75 Bold

Noto Sans CJK KR Medium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기업·기관이 비영리단체와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사회 공헌활동을 추진하여 지역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지역사회가 인정해주는 제도

Noto Sans CJK KR Bold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기업·기관이 비영리단체와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사회 공헌활동을 추진하여 지역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지역사회가 인정해주는 제도

Helvetica Neue LT Std 55 Roma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 the Community 0123456789

Helvetica Neue LT Std 65 Medium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 the Community 0123456789

Helvetica Neue LT Std 75 Bol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 the Community 0123456789

3. 시각상징 응용형_인정패

인정패는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가장 대표적인 상징물로 추가 제작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인정패 분실 또는 훼손으로 인해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공헌센터와 협의해야 한다.



- 재질 : 황동 + 무광 코팅 + 우드
- 가공 : 화이트 부식 음각, 절곡 등

4. 인정 라벨

인정 라벨은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등을 가장 대표적으로 알리는 공식 표기 수단으로 왜곡·변형·오남용 등 어떠한 이미지 손상도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기본형 인정라벨 : 최소 사이즈 규정 세로 15mm
- 가로형 인정라벨 : 최소 사이즈 규정 세로 8mm
- 세로형 인정라벨 : 최소 사이즈 규정 세로 15mm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신청서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홈페이지(https://crckorea.kr/csrcommunity/)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관유형	민간기업	[]대기업(사업장, 지점, 지소 등)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공공기관	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공기관([]공기업 []출자기관 []출연기관)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기타	[]교육기관 []의료기관 []기타단체()			
신청기관	기관명		대표자	(직책 :)
	소재지			
	연락처		이메일	
	사업자등록번호		종업원 수	
	자본금	백만원	매출액	백만원
신청부서	부서명		담당자	(직책 :)
	연락처		이메일	
사회공헌 분야 (SDGs) ※ 중복가능	빈곤층 감소와 사회안전망 강화	[]	식량안보와 지속가능한 농업	[]
	건강하고 행복한 삶	[]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	[]
	성평등 보장	[]	건강하고 안전한 물관리	[]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	[]	좋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성장	[]
	산업혁명과 사회기반시설 확충	[]	모든 종류의 불평등 해소	[]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
	기후변화 대응	[]	해양생태계 보전	[]
	육상생태계 보전	[]	인권 · 정의 · 평화	[]
	지구촌 협력확대	[]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운영지침」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귀중

첨부서류	1.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취소 확인 및 동의서(별지 제1-2호 서식) 2.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비영리단체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3.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4. 그 밖에 지역사회공헌 인정심사 지표별 증빙자료(별지 제3호 서식)	인정심사 비용 (별표 2)
------	-------------------------------------------------------------------------------------------------------------------------------------------------	-------------------

210mm×297mm[백상지 80g/㎡]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취소 확인 및 동의서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홈페이지(https://crckorea.kr/csrcommunity/)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관유형	민간기업	[]대기업(사업장, 지점, 지소 등)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공공기관	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공기관([]공기업 []출자기관 []출연기관)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기타	[]교육기관 []의료기관 []기타단체()			
신청기관	기관명		대표자	(직책 :)
	소재지			
	연락처		이메일	
	사업자등록번호		종업원 수	
	자본금	백만원	매출액	백만원
신청부서	부서명		담당자	(직책 :)
	연락처		이메일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신청을 위해 인정의 취소 확인 및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운영지침」 제8조(인정의 취소)에 따라 취소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인정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동의합니다.

<인정의 취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
- 폐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회적 논란 또는 물의를 일으켜 법적 판결을 받아 지역사회공헌이라는 목적 달성과 현저하게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또한,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인정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 및 중앙행정기관·지방행정기관·유관단체 등에 통보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아 인정이 취소된 기업등은 그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신청이 제한됩니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운영지침」 제4조에 따른 신청 및 제8조제2항에 따라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귀중

210mm×297mm[백상지 80g/㎡]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비영리단체 추천서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홈페이지(<https://crckorea.kr/csrcommunity/>)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천기관 정보 <small>(비영리단체)</small>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연락처		이메일	
추천대상 정보 <small>(인정(예정)기업·기관)</small>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이메일	
대표 사회공헌	프로그램명	추진기간	수혜대상	성과
추천사유 <small>(500자 이내)</small>				

위 사실을 확인하여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인정기관」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비영리단체)

(직인)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귀중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심사 증빙자료 작성양식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홈페이지(<https://crckorea.kr/csrcommunity/>)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관명		작성자	
심사분야	환경경영(E)	[]추진체계(E-1) []친환경사업(E-2)	
	사회공헌(S)	추진체계(S-1)	[]추진전략(S 1-1) []추진조직(S 1-2) []직원교육(S 1-3) []의사결정(S 1-4)
		문제인식(S-2)	[]문제확인(S 2-1) []문제공유(S 2-2) []프로그램기획(S 2-3)
		프로그램(S-3)	[]자원투입(S 3-1) []자원봉사(S 3-2) []프로그램운영(S 3-3) []프로그램점검(S 3-4) []프로그램평가(S 3-5)
		네트워크(S-4)	[]지역주민(S 4-1) []비영리단체(S 4-2) []사회적경제기업(S 4-3) []중소기업(S 4-4) []지방정부(S 4-5)
		성과영향(S-5)	[]성과측정(S 5-1) []영향평가(S 5-2) []성과확산(S 5-3)
윤리경영(G)	[]이해관계자(G-1) []리스크관리(G-2) []정보공개(G-3)		
근거자료			
증빙자료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홈페이지(<https://crckorea.kr/csrcommunity/>)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CSR in the
Community

지역사회공헌 인정 증명서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 the Community Certificate

인정번호 :
사업장명 :
대표자 :
소재지 :
인정기간 :

귀 사업장을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 · 인정기관으로
승인되었음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 establishment has been approved as
'CSR in the Community' Recognition Corporation·Recognition Institution.

. . .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210mm×297mm[백상지 80g/㎡]